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543931 판결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묵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피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노창, 송주영, 심지영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4. 8.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승마용 마필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부부한정회원이 되었다. 위 회원가입계약 제4항의 A호에서는 '회원은 가입일로 5년 후 C에 회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마클럽은 보증금 총액 40%를 소멸하고 60%를 회원에게 반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20. 7.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하였으니 할인되기 전의 입회보증금인 1억 2,000만 원의 60%인 7,200만 원을 원고들에게 1/2씩 나누어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분은 2020. 7.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4. 8. 14.경 부부한정회원이 되기 위한 입회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할인 받아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들이 입회보증금의 60%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인 회원가입계약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60% 상당액인 7,200만 원을 원고들에게 1/2씩 나누어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경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제4항의 A호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증금 1억 원의 60%인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부부한정회원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60%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회비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 8. 14.부터 2020. 10.경까지 74개월 동안 사용회비 합계 6,6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반환할 입회보증금 6,000만 원에서 6,66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불안과 원고들이 전용으로 타던 말이었던 ‘E’가 2017. 2. 4. 폐사하여 승마장을 이용할 수 없었는바, 원고들에게 사용회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계속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4,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제3항에서는 부부한정회원의 경우 월 90만 원의 사용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2014. 8. 14.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사용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증인 D은 원고들로부터 1년치 사용회비로 9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비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증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D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제5항에서는 ‘부부회원은 2인 1마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윈블러드 종인 ‘E’라는 전용 말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용 말인 ‘E’가 사망하여 피고 승마클럽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라면 당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등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초 원고들은 입회 후 1년 남짓 승마장을 이용하다가 ‘E’가 사망하고 피고가 경영곤란을 겪으면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회비도 그 시점부터 납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6년 10월까지도 ‘E’라는

말이 회원들에게 여전히 배정되고 있었던 점, ‘E’라는 말은 2017. 2. 4.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E’ 외에도 다른 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한 다른 말로 승마를 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은 2017. 10월경 피고를 방문하여 부부회원권을 아들 F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F는 2017. 10월과 1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에 피고를 방문하여 승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8. 14.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2020. 10.경까지 피고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고 관련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피고 승마장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위 기간 동안 사용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용회비로 적어도 피고가 청구하는 6,660만 원(= 74개월 ×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E’가 사망한 2017. 2. 4.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회비와 같은 사용료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고 2017. 2. 4.로부터 이미 3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2017. 2. 4. 이전에 발생한 사용료 채권액 상당은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공제 주장을 담은 2020. 10. 1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0. 10. 13.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사용회비 채권들의 경우 위 주장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2020. 7. 30. 송달됨에 따라 원고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2020. 7. 3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피고의 사용회비 채권은 피고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중 원고들의 사용회비 지급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입회보증금에서 연체 사용회비를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피고의 신뢰와 사용회비 연체 상태에서 회원가입관계를 지속해 온 회원인 원고들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 사용회비는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입회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2014. 8. 14.부터 2020. 10.경까지 발생한 사용회비 채권 중 원고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인 2020. 7. 31.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연체 사용회비 채권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 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리고 위 날짜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연체 사용회비 채권은 민법 제495조의 적용에 따라 원고들의 입회보증금 채권 6,000만 원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회비 채권 중 일부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상당액인 6,000만 원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회비 채권 상당액인 6,66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원고들이 반환 받을 입회보증금이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